



홍 재 희 선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호주 전기안전규제

호주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은 호주 전기제품 안전규정에 따라 규제 또는 관리된다. 호주에서 적용하는 전기안전 인증제도는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마크인증제도이며,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에 적용가능한 제도로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라는 규제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를 2013년부터 시행하였고 이는 퀸즈랜드(Queensland)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로, 타즈메니아(Tasmania)에서는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Western Australia, Victoria, South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NSW는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NSW의 규제정보에 대해서는 [www.fairtrading.nsw.gov.au](http://www.fairtrading.nsw.gov.au) 를 참고하여야 한다.

먼저 대상품목의 호주 내 공급자는 반드시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의 National Database에 공급자등록(Responsible Supplier)을 해야 하며, 책임 공급자 등록(Responsible Supplier) 시 10자리 공급자 번호(예, ERAC000123)가 발급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게 된다. 등록된 공급자는 EESS 규정에 만족하며 AS/NZS 4417.1:2012에 따라 RCM 마크를 표시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만 EESS에 참여한 모든 관할구역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EESS에 의해 규제 제품군(in-scope electrical equipment)은 정격 50V AC RMS 또는 120V ripple-free DC 이상 제품과 1000V AC RMS 또는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제품 중 가정용 또는 개인용 제품이 모두 해당되며, 만약 절대적으로 상업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규제제품군은 위험도에 따라 Level 1(저위험), 2(중위험), 3(고위험)군으로 나뉘며 위험군 Level에 따라 규제요건이 달라진다. AS/NZS4417.2에서 LEVEL 2, 3로 명시된 품목 확인이 가능하며, LEVEL 2, 3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LEVEL 1에 해당됨

- LEVEL 1에 해당되는 전기제품은 LEVEL 2와 LEVEL 3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기기가 해당되며, 적용 규격에 준수함으로써 제품에 RCM마킹을 하여 규제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 별도 기술문서나 적합증명서, CoC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 LEVEL 2 기기는 중간 위험도로 분류되며, 제품의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규제/등록기관(ERAC)의 요구 시 10일 이내에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 데이터 베이스 등록 시 기술문서를 사전 업로드 할 수 있다. 전기안전 기준 및 제품 규격에 따라 적합한 제품에는 RCM 마킹이 요구된다.

※ LEVEL 2에 요구되는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는 전기안전 기준에 명시된 문서 및 시험 성적서를 포함 한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마지막으로 수입 되었을 시 또는 공급 업체에서 제조 된 날짜로부터 5년 동안 현지 수입사업자 측에서 보관해야 한다.

- LEVEL 3 해당기기는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가진 기기를 말하며 LEVEL 2와 동일한 요구사항(제품사양, RCM 마킹,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적용되나 추가로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C)가 요구된다. 적합한 시험소로부터 각각 유형 및 부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상세 내용은 규격 AS/NZS 4417.2:2012 에서 확인가능하다.

**시험기관**

- 호주인정협회(NATA)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
- IANZ 지정 시험소
- ILAC-MRA 체결 시험소
- ILAC 산하의 국가별 인정기구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
- IECEE 국제공인시험기관(CBTL)\_Deviation 적용 되어야 함
- 국가 정부 간에 상호인정 시험소

**• Level 3 절차**

1.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 (Responsible Supplier) 등록
2.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3.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CoC) 등재
4.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5.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6. 제품 등록비 지불
7. RCM 마크 부착

**인증절차 및 요건**

**• Level 1 절차**

1.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2.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 (Responsible Supplier) 등록
3.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브랜드 및 제품종류 (Product Type) 등재
4. RCM 마크 부착

**• Level 2 절차**

1.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2.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 (Responsible Supplier) 등록
3.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 등재 또는 요구시 10일 이내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
4.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5.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6. 제품 등록비 지불
7. RCM 마크 부착

**인증마크**



모든 Level의 제품은 RCM 마크가 강제이다.

- Level 1: RCM + 브랜드명
- Level 2: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 Level 3: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표시 요구사항은 규격 AS/NZS 4417에 따라 RCM 마크는 제품에 표기된 모델명에 최대한 가깝게,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 외부 표면에 표기되어야 한다.

※ 마크요건 상세 : AS/NZS 4417.1 (Use of Mark)를 참조